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006
2022.10.17.

4분기 수출도 먹구름, 금리상승·원자재가 상승 등 주요 원인으로 꼽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일부개정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2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유광수

총괄 이서혁 hjdk903@kctdi.or.kr

편집기획 정왕국 kingdom@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이승훈 lsh0910@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마케팅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기자단 고은지, 구여영, 김경인, 김단비
노현정, 박세은, 이수현, 이승현
이정민, 장준상, 정유미, 홍수민
김민주, 문예슬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2년 10월 17일(통권 제2006호)

ISS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정보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N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 4분기 수출도 먹구름,
금리상승·원자재가 상승 등 주요 원인으로 꼽혀 4

Weekly News 6

인천항(해상) 맞춤형 화물관리업무 Q&A 12

Infographic News 16

최신개정법령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일부개정 19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9

공고

-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20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2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25

-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 ... 25

관세행정실무해설

관세행정안내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 27

질의응답사례

- 카스터(Caster)의 품목분류 33

판례동향

조세심판결정례

-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
물품에 대하여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6

품목분류동향

품목분류해설

- 바닥용 Decorative paper의 HS 품목분류 47

세번 바로잡기

- 팜주(palm wine) 56

상식 밖의 상품학

- 남아공, ‘아프리카 별’ 환수 요구 58

4분기 수출도 먹구름, 금리상승·원자재가 상승 등 주요 원인으로 꼽혀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5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

누적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월 7일 발표한 2022년 8월 국제수지 잠정통계자료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상품수지 및 서비스 수지에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4억 5,000만 달러와 7억 7,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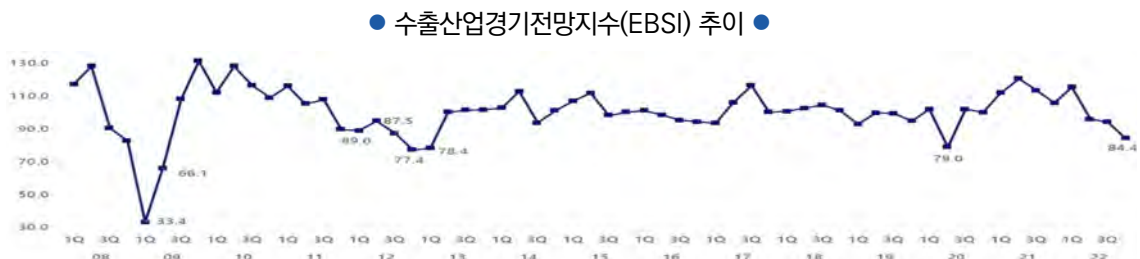
8월 수출은 석유제품,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56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각각 36.1%, 16.4%, 28.2%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2% 증가한 66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불균형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누계 289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하면서도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인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월 5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 Export Business Survey Index)’에 따르면 3분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84.4를 나타내 세 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며 수출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과 환율변동 확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가 EBSI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항목별로는 4분기 수출제품 원가(65.1), 수출대상국 경기(75.2), 물류 및 운임(79.3)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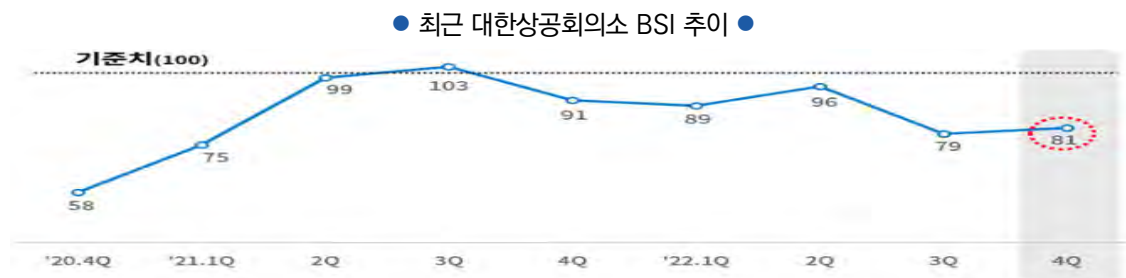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선박(149.9)과 반도체(112.0)의 4분기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외 품목의 수출여건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수출기업들의 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와 유가, 주요 항로별 해상 운임이 3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원재료 가격 상승(25.4%), 물류비 상승(18.0%) 애로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로 꼽혔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미국이 고강도 양적 긴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14.9%)과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4.1%) 애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월 29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4분기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4분기 전망치는 81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79)와 큰 변동없이 기업체감경기가 5분기 연속으로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로는 조선·부품(103), 의료·정밀(102)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광물(70)이 특히 부진했는데, 공급망 차질에 고환율이 겹쳐 원가 부담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조선·부품은 지난 분기에 이은 수주 호황과 高 선가가, 의료·정밀은 코로나19 특수가 지속되며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4분기 경기전망치가 69로 집계돼 중견·중소기업의 전망치 8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IT·전자, 철강, 화학 업종들의 경기전망이 모두 부진한 결과로 풀이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말 즈음에 풀릴 것으로 봤던 대외 경기가 오히려 악화되거나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실망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기나 환율 등 대외 변수에 더 민감한 대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 발표

국민편의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 담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10월 5일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쇼핑물, 배송업체 등의 물류혁신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방식 선진화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전자상거래 글로벌 시장규모는 작년 약 7,7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달러, 2030년에는 6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홈코노미 현상에 따라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역직구 가건수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도 약 2,200만건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3만 8,000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대 주요 추진과제 및 시행시기 ●

분 야	20대 주요 추진과제	시행시기	분 야	20대 주요 추진과제	시행시기
① 국민편의 제고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22.11월	③ 전자상 거래 수출 지원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	'22.12월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22.10월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22.10월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22.12월		⑫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2.12월
	④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22.10월		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22.10월
② 소비자 보호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22.11월	④ 제도· 인프라 정비	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22.11월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22.12월		⑮ 韓-中 복합운송 활성화	'22.10월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22.10월		⑯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22.12월
	⑧ 해외직구 약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22.9월		⑰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22.10월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22.10월		⑱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23.9월
				⑲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22.12월
				⑳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22.12월

산업부, 기업 수출 걸림돌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

수출기업 최대 애로인 물류비 약 30억 지원 대상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수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물류비 지원을 통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월 5일 수출현장지원 4차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9월부터 매주 대구,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4차 간담회에는 천안 인근 기업 7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업들은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33건의 애로를 제기해 왔다.

수출유관기관은 그 중 21건에 대해 추가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

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서는 10월 6일 수출상황실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다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인증 등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는 총 120억원(물류 90억, 인증 20억, 해외마케팅 10억)을 편성해 지난 9월 14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 중이다. 물류, 인증 지원 신청(소진시까지)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다.

또한 해외마케팅은 12월 1일 2022 봄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나,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에서 이달 26일까지 온라인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보, 보증기간 3년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도입

3년간 활용 가능한 수출신용보증 도입으로 무역금융 지원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K-SURE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중기 보증 도입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K-SURE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도 1년 단위로 심사됐으나,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다.

또한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 단위로 청구된다.

K-SURE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지원제도 확대 개편을 위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한 확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강화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

10월에는 보증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추가 개편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

산업부, ‘수출상황실’ 개소 및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전망 및 건의사항 ●

업종명	수출 여건 및 전망	건의사항
반도체	▶ IT 수요둔화 가속화와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 팹리스,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건의
철 강	▶ 글로벌 철강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 전망	▶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 및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 요청
석유화학	▶ 세계경제 저성장 전망에 더해, 국내 정기보수 등 쉽지 않은 수출 여건	▶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지원 등
자동차	▶ 반도체 수급 상황,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	▶ 원자재가격 상승 및 고환율 상황 속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기간연장 등
이차전지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로 수출성장세 지속 전망	▶ 운송수단 확대·지원을 통한 기업물류 운임, 선적공간, 배차 등 지원 요청

관세청, 외국産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

단속 강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産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이번 외국産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産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 조달 과정에서 외국産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을 공조해 올해 9월까지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産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

 수입당시 마스크 사진	 수입 후 국산 제품 가장용 재포장지
--	---

산업부, 韓·英 FTA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韓·英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韓·英 FTA는 작년 1월 1일 발효됐으며, 협정문 제15.5조의 2에 따라 韓·英 FTA 개선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韓·英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

를 작성해 10월 17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 이행과(ojh9102@korea.kr)에 사전 참가신청을 해야한다.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韓·英 FTA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견을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은 전자관보(gwanbo.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2022년 10월 7일자)



기획재정담당관
최연수

인천항(해상) 맞춤형 화물관리 업무 Q&A¹⁾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제2005호, 2022.10.10. 발간)에 이어 인천항(해상) 맞춤형 화물관리 업무 중 과태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상화물 관세행정 관련 과태료

◆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는 모든 경감 제외, 금품공여(§조의2)자는 1), 2) 경감 제외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

– A등급 : 20%, AA등급 : 30%, AAA등급 : 50% 범위 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 범위 내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범위 내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5% 범위 내

※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

1)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 <인천항(해상) 맞춤형 화물관리업무(2021.12.)> 발췌

하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과태료부과처분 받은날 - 같은 위반행위 적발된 날)

위반사항	위반법조	적용법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 위반	§140⑤	§277④2	50	100	200	200
외국무역선 하역장소 반입기간 경과후 반입						
-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140⑤	§277④2	25	50	100	100
-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140⑤	§277④2	50	100	200	200

적재화물목록 정정

※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1. 1년간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회이상 150회 이하 : 1구간
2. 1년간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이상 300회 이하 : 2구간
3. 1년간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이상 : 3구간

※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위반사항	위반법조	적용법조	과태료 금액(만원)		
			1구간	2구간	3구간
선하증권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B/L 추가)	§135② §136②	§277⑤1	10	20	30
적재화물목록의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135②	§277⑤1	10	20	30
과적단속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135②	§277⑤1	10	20	30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					
입항	- 하선결과보고서, 반입결과 이상보고서 제출된 경우 : 15일 이내	§135② §277⑤1	10	20	30
	- 특수저장시설 장치를 요하는 물품으로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립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완료 다음날까지	§135② §277⑤1	10	20	30
	- 기타 : 선박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135② §277⑤1	10	20	30
출항	해상화물 : 90일	§136② §277⑤1	10	20	30

보세운송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과태료부과처분 받은날 - 같은 위반행위 적발된 날)

위반사항	위반법조	적용법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보세운송 신고·승인 명의 위반	§214	§277④2	50	100	200	200
보세운송통로 제한 위반	§216①	§277④5	50	100	200	200
보세운송기간 경과						
-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	§216②	§277④2	10	30	50	50
-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초과 5일 이내	§216②	§277④2	25	50	100	100
-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	§216②	§277④2	50	100	200	200
조난물품 운송승인 위반	§219②	§277②1	200	500	800	1,000
내국운송 신고 불이행	§221①	§277④2	50	100	200	200
내국운송 도착보고 의무 위반						
-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	§221②	§277④2	25	50	100	100
- 도착한 날부터 5일 초과하여 보고한 경우	§221②	§277④2	50	100	200	200
운송수단의 시간외 물품취급 통보의무 위반	§321②2	§277④6	50	100	200	200

※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1.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 1구간
2.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 2구간
3. 1년간 21회 이상 30회 이하 위반한 경우 : 3구간

위반사항	위반법조	적용법조	과태료 금액(만원)		
			1구간	2구간	3구간
보세운송 도착 미보고					
-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	§215	§277④2	25	50	100
- 도착한 날부터 5일 초과하여 보고한 경우	§215	§277④2	50	100	200

반출입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과태료부과처분 받은날 - 같은 위반행위 적발된 날)

위반사항	위반법조	적용법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없이 거짓으로 반입신고	§157①	§277④7	50	100	200	200
외국물품취급자의 단속에 대한 세관장명령, 세관공무원 지휘 위반	§162	§277⑤4	25	50	100	100
장치기간내 물품반출 명령 위반	§177②	§277⑤6	25	50	100	100
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신고의무 위반	§183②	§277⑤4	25	50	100	100
보세창고 내국물품 전용 장치시 승인 의무 위반	§183③	§277⑤4	25	50	100	100
장치기간 경과 내국물품 반출의무 위반	§184	§277⑤4	25	50	100	100

※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1.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 1구간
2.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 2구간
3. 1년간 21회 이상 30회 이하 위반한 경우 : 3구간

위반사항	위반법조	적용법조	과태료 금액(만원)		
			1구간	2구간	3구간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 위반					
- 반출입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한 경우	§157①	§277④2	10	30	50
- 반출입한 날부터 2일초과 5일 이내 신고한 경우	§157①	§277④2	25	50	100
-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 신고한 경우	§157①	§277④2	50	100	200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위반					
-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157조의2	§277⑤4	10	30	50
-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157조의2	§277⑤4	25	50	100

일러두기

본 자료는 인천항(해상) 화물관리업무와 관련한 빈번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알기 쉽게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에서 QnA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후 개정법령은 법제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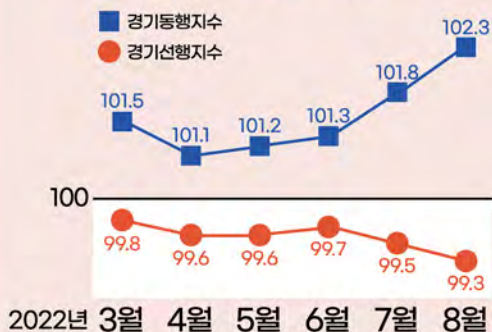
이 자료는 인천항(해상) 화물관리업무에 관하여 업체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nfographi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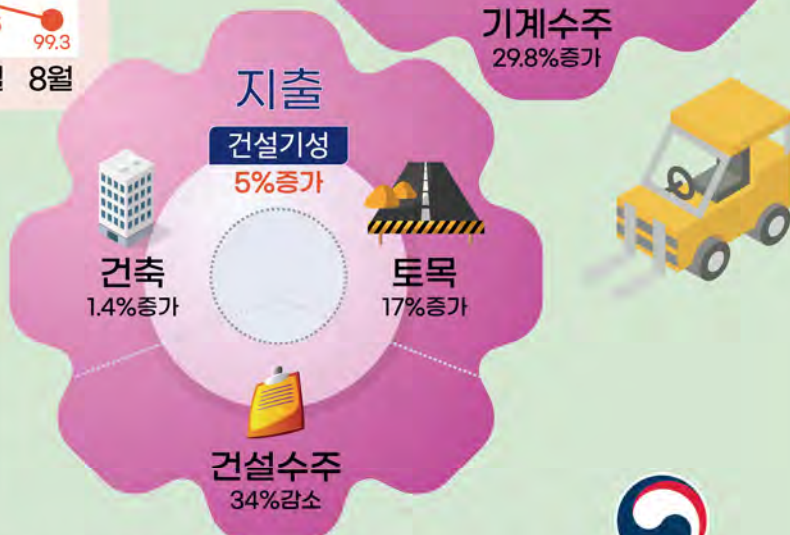
2022년 8월 산업활동 동향 (전월대비)



경기지수 순환변동치



생산은 공공행정(백신영향) ·
광공업 감소로 소폭 조정
재화소비(소매판매) 큰 폭 반등,
서비스업 소비 증가폭도 확대
설비 · 건설투자 모두 크게 증가,
경기동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지 편집실에서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주간 관세무역정보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06호_2022.10.17.

최신개정법령

본 내용은 www.custra.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일부개정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

法

고 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10.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 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 등 2건	612
503	2022-48호('22.10.6)	Wood sawn 등 2건	613
504	2022-48호('22.10.6)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	614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9호, 2022.10.11.)

◇ 주요 개정 내용 ◇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 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 세통관의 정의 개정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제7조)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제9조)

- 사후(우편물 배송 후) 우편물목록 제출 대상을 알기 쉽도록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에서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로 명확히 함.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 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14조)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우
편물 통관안내서 서식 간소화

(안내서 예시 유형 4종을 2종으로 통합)

- 통관 안내서 발송 취지, 간이통관대상과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범위 및 통관방법,
주요 물품의 통관 안내 등을 상세히 설명
- 세관 통관 문의 연락처에 고객지원센터
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별 연락처를 구분
하여 안내

□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제22조)

○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
청절차를 안내할 때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확히 함.

○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함.

(간이통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처
리기한 삽입)

□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 제11조(검사대상 및 방법)제4항, 제20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제5항 및 제6항,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
고지),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
제2항,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시행일자 : 2022. 10. 11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 전문 : www.custracom.com 참조

공 고

■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49, 2022.10.6.)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5:00-16:0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컨퍼런스룸(남측) 317C호

3. 주요 논의 내용

○ 한-영 FTA 개선 개요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주제 관련 발표 및 패널 발언

○ 주제 관련 기관/업계/전문가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 및 발언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4. 참가 신청

○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 또는 질의를 희망
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22년
10월 17일(월)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
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 044-203-5761 /
이메일: ojh9102@korea.kr)로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
하여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가 신청서 양식]

[붙임]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소속 및 직위	* 개인정보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방청 () 의견제시 또는 질의 () 서면의견제출 () * 희망하는 란에 ○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의견 요지	
질의 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93, 2022.10.7.)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

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0~7.61%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stajr21@
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
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목
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
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
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
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mm)를 초과하
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
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
용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8, 2022.10.1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및 [별표 2] 신설, 종전의 [별표 2]는 [별표 3]으로 수정)
-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4조의제7항(종전의 제5항) 개정)

다. 식품명인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추가(안 제39조제1항 신설 및 [별표 3](종전의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unique63@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2135, 팩스 044-868-0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산림청공고 제2022-321, 2022.10.7.)

관보 제20342호(2022. 09. 28.)에 게재된 산림청공고 제2022-31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수정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청공고 제2022-55, 2022.10.7.)

「국세징수법」 제13조·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2.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납부기한에 대해 직권으로 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분류	세부 기준	대상
송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개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2.9월 선포된 태풍피해 지역* 사업자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통영(육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피해 지역 개인, 법인

○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 연장된 납부기한 : '22. 12. 31.까지

분류	세부 기준	대상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2.9월 선포된 태풍피해 지역* 사업자	피해지역 법인

분류	세부 기준	대상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통영(육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공고
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1)¹⁾

권 중 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ACVA 제도의 이해

가. ACVA 개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수입 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면, 관세 등 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국내 판매 가격을 결정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즉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추후 세관 당국의 사후 세액심사에 의해 추징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 등 세액 추징은 기업에 예기치 못한 비용을 유발해 경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CVA 제도는 다국적 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관 당국에게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사후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호혜적인 제도다.

나. ACVA 연혁

관세청은 특수관계자들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형태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세관 당국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세 마찰을 줄이고자, 2008년 「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제3호 개정을 통해 ACVA 제도를 도입했다.

1) 관세평가분류원, <2020 ACVA 연차보고서(2021.9.)>에서 발췌

2010년에는 ACVA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 및 수정신청 절차 신설 등 심사 절차를 정비했으며, 2012년에는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ACVA 결과와 같이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2014년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ACVA와 APA를 동시에 신청해 관세청과 국세청 양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ACVA와 APA 간 사전 조정 제도(법 제37조의2)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외국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서류 축소(9종 → 3종), 처리기한 단축(1년 → 6개월) 등 ACVA 신청을 간소화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Easy ACVA'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에는 ACVA 활성화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해 그동안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해오던 ACVA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국 5개 본부세관으로 확장했으며, ACVA 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ACVA 위원회)'를 설치했다.

2018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했고, 연례 보고서 제출 및 ACVA 결정 내용의 변경·철회·취소의 근거를 관세청 고시에서 「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으로 상향 입법했다.

2019년에는 ACVA 적용(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연례 보고서 제출기한도 연장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관세조사 등에 활용될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ACVA 제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2020년에는 ACVA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의 반려 사유 등 ACVA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세청 고시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했다.

다. 일반사전심사 제도와 비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非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 사전심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와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ACVA(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전심사의 대상은 최근까지 법 제30조의 내용 중 실제지급가격과 가산·공제요소 및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법 제30조(거래가격 방법)뿐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포함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일반 사전심사는 '非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수입물품을,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수입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특성상,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등 거래가격 배제 사유 해당 여부, 가산·공제요소를 비롯해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물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급액의 가산·공제 요소 해당 여부 등 일부에 한정해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일반 사전심사로 전환해 처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 사전심사와 ACVA는 그 처리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일반 사전심사는 납세자가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그 거래 내용과 관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ACVA는 크게 납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과 연례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전심사와 차이가 있다.

ACVA 절차는 사전상담과 신청서 접수, 본부세관장의 검토,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결과 통보와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거쳐 최종 사전심사 결정서가 교부된다.

그 후 적용기간 동안 매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례 보고 검토 결과에 따라 ACVA 결정이 취소, 철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일반 사전심사와 ACVA의 차이점 ●

구분	일반 사전심사	ACVA
근거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1·2호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대상	• 「관세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사항 • 「관세법」 제30조 적용 불가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1~35조) (非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	•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기간	• 3년	• 3년 + 2년(최장 5년)
절차	• 신청 → 검토 → (일방적)결정서 교부(→ 재심사 가능)	• 신청 → 검토 → 검토의견 통보 → 동의 → 결정서 교부 (→ 재심사 가능)
사후관리	• 별도 절차 없음	• 연례 보고서 제출

2. ACVA와 APA

가. 관세평가 제도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법」의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제도는 물품의 수입 시점에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목적이고, 과세 단위가 각 수입신고 물품(건)으로서 개별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및 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 달리 국세청의 내국세 목적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한 소득 이전을 방지하고 국가 간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사업(회계)연도로서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유에 대해 과세하므로,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의 기능 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세평가 제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의 차이점 ●

구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
法源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	Transaction Value(거래가격)	Arm's Length price(정상가격)
과세대상 (표준)	개별 수입물품(유형의 재화)[가격(물품 원가)]	모든 형태의 국제거래(재화, 용역, 자산, 금융 등) [기업의 소득(이윤)]
평가단위	수입신고 건	사업(회계)연도 단위
평가방법	거래가격 방법(최우선) 이하 순차적 방법 (Sequential order)	최적 방법(Best method rule)
비교 가능성 기준	물품의 유사성(Product similarity)	재화의 유사성뿐 아니라 기능분석, 계약조건, 경제적 환경 등 비교가능성 검토

나. ACVA와 APA의 비교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을 통해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range)에 대해 세무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APA의 종류는 당사자에 따라 일방 APA(Unilateral APA), 쌍방 APA(Bilateral APA), 다자간 APA(Multilateral APA)로 구분되며, 일방 APA는 어느 한 국가의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며, 쌍방 또는 다자간 APA는 둘 또는 그 이상 국가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들이 개입해 협상하고 동시에 합의하는 제도다.

관세청의 ACVA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근거, 신청대상, 평가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ACVA와 APA의 차이점 ●

구분	ACVA	APA
법적 근거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제37조)	-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TPG)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신청 대상	- 재화 - 수입신고가 예정된 물품	- 재화, 용역 및 서비스 - 이전가격세제 대상이 되는 모든 과세기간별(연도별) 거래
결정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평가방법	- 제1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 제1방법(거래가격) - 제2방법(동종동질 물품 거래가격) -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 제4방법(공제가격) - 제5방법(산정가격) - 제6방법(합리적기준)	- 제1순위 :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재판매 가격방법 - 원가가산방법 - 이익분할방법 - 거래순이익률방법 - 제2순위 : 기타 합리적인 방법
사전심사 효력	- 사전심사 결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 결정일로부터 3년(2년 연장 가능) 이내에 수입신고 되는 건에 효력, 소급적용 불가	- 사전승인 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행한 경우 해당 신고는 정상가격으로 간주 - 통상 5년 적용, 소급적용 가능(쌍방 APA는 5년, 일방 APA는 3년)

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와의 조화

이전가격 세제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관세평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해당 이전가격 또는 이익률이 그 정상가격 범위에 있다고 해서 관세 목적상 거래가격이 항상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관 당국의 관심사는 어떤 가격이 당사자 간 특수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influenced)’ 여부, 즉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고, 국세 당국의 목적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찾는 것이다.

이 둘 모두는 각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조건 하에서 협상했던 것처럼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책정 방법론에는 유사한 점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 세제가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prominent role)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TP) 결정이나 국제거래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이를 기초로 설계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인 ‘판매 주변 상황 검토(examinati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의 검토에 있어 다국적 기업이 조세 목적상 작성하는 이전가격 책정보고서(Transfer Pricing Study/Report)는 훌륭한 정보원(source)이 될 수 있다.

물론 세관 당국이 오로지 이전가격 책정보고서와 관련 문서들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결국 세관 당국은 다양한 출처를 가진 ‘증거에 대한 종합적 검토(totality of the evidence)’를 기초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카스터(Caster)의 품목분류

기구·장비 등의 하단에 장착돼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철강제 장착구를 갖춘 지름 50mm의 바퀴인 카스터(Caster)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A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8302.20-0000호에는 ‘카스터(Caster)’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e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 이하인 것

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이 카스터(Caster)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제8302.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

원상태 수출 인정 범위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원상태 수출하려는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원상태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됐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할 경우(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등)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통관

락카 도로 해외 직구 시 통관 가능 여부

해외 직구로 모형용 락카를 구매하려는데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문의한 물품은 대략적으로 HS Code 제3212.90-1000호(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에 분류가 검토되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문신용 염료

②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특수통관

해외 직구 수공구의 자가사용 허용 개수 문의

해외 직구로 펜치, 니퍼, 드라이버와 같은 수공구 제품을 구매하려는데, 2~3개를 한 번에 구매해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같은 모델의 전동공구는 몇 개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요?

A 먼저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수공구제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 범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해 통관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치, 니퍼, 드라이버의 경우 1~2개(미화 150달러 이하)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문의한 전동공구가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는 것이라면 1개(미화 150달러 이하)만 수입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통관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수입

캠핑용 칼의 수입요건

제8211.93-0000호에 분류되는 캠핑용 칼의 수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제8211.93-0000호에 분류되는 캠핑용 칼을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
- 재크나이트(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②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
- 재크나이트(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으로서 수입 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국일까지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반출확인 없이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없이 출국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번호 : 조심2022관0014(2022.7.14.)
- 청구인 : ○○○
- 주 문 : ○○○ 세관장이 2021.10.1.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 영주권 보유자로 2021.3.31. 5:20 ○○○ 항공을 이용하여 ○○○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AAA 상표 팔찌 등 물품원가 미화 ○○○불 상당 ○○○점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체류기간 중 일시 사용 후

출국 시 반출할 물품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요청하자 출국 시 재반출을 조건으로 재반출 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이하 '일시반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관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7.31. 출국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1.10.1.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영주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이하 「휴대품 통관 고시」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쟁점 물품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등 신변용품 내지 신변 장식용품에 해당하여 「휴대품 통관 고시」 제19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에 해당한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출국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고자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세관의 전산시스템 문제로 반출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량이 통상 국내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보기에 수량이 과다해 실제 사용할 물품만 반입하고 나머지는 유치하여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여행자 권익 보호 내지 적극행정 차원

에서 쟁점물품 모두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등록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이었기에 등록해 준 것이며, 청구인은 입국 당시 3시간 가량 걸려 물품, 수량, 가격을 기입한 물품 내역을 작성하고 이후 자가격리 중에도 처분청이 보내온 물품 내역 목록 중 색상이나 브랜드명이 잘못 표기된 것을 일일이 정정하여 바로잡는 등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진 일시반입확인서 발급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반출확인 없이 출국하여 결과적으로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입국 시 반입신고를 할 때와 동일하게 출국 시에도 반출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반출신고는 청구인이 이행하려고 해도 세관에 사정이 있어 반출신고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출국 시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부득이 반출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 놓여 그대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를 반출신고 미이행으로 보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쟁점 처분은 가혹하다.

청구인의 반출확인을 받으려고 한 과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관신고대를 방문하여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라고 안내받은 사실을 말하자,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외국에서 입던 옷 몇 개라고 하였

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일시반입확인서도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면서, 체크인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체크인을 마치고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이후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 청구인이 반출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4개월 정도 체류한 후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2021.7.31. 오후 8시 40분 비행기를 탑승할 예정임에도, 반입신고 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반출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발시간 보다 4시간 넘게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심사대로 향하였으나, 탑승권 없이는 출국심사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받기 위해 오후 4시 15분경 탑승할 비행기의 항공사인 ○○○ 항공 탑승수속처로 갔으나, Covid-19의 확산으로 항공운항 스케줄이 급감함에 따라 탑승수속처는 상시 근무가 아닌 오후 5시경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어 청구인은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반입신고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쟁점 물품에 대한 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사실 및 쟁점물품의 수량이 많아서 출국 시 출국심사대에서 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탑승권 없이 출국심사대로 바로 가려고 한 것이고, 출국심사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반입신고한 내역에 대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출국심사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상주직원은 세관반출신고대에 연락해 보고 청구인

에게 출국심사대가 아닌 세관반출신고대로 바로 가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세관반출신고대로 간 것이다.

청구인은 오후 4시 반경 세관반출신고대에 도착하여 세관 직원에게 2021.3.31. 입국할 당시 반입신고 했던 물품들에 대한 반출신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고, 세관 직원이 일시반입확인서를 가져왔는지 묻자 이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입국할 때 반입신고했던 물품들이니 여권이나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반입신고했던 내역을 보고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여권으로 확인해줄 것을 세관 직원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세관 직원은 여권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반출할 물품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에 청구인은 캐리어 2개에 들어 있는 옷, 가방, 신발 등이라고 하면서 반출신고를 하러 왔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여권으로 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던 세관 직원이 반입신고 내역이 없어 반출신고를 할 수 없다고 대답함에 따라 청구인은 세관 직원에게 자신이 반입신고했던 상황, 담당 세관 직원이 거주지까지 와서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재차 확인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세관 직원은 반입신고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 반출신고도 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세관 직원이 청구인의 반입신고 내역을 2~3번 조회한 이후 반출신고 업무를 보려는 다른 민원인들이 방문하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진 청구인은 세관 직원에게 한 번 더 반입신고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모니터를 같이 봐도 되는지에 대하여 세관 직원의 양해

를 구한 후 함께 반입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았을 때에도 청구인의 여권번호, 반입신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조회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입국 시 반입신고 내역은 없었다.

처분청은 세관 직원이 사용하는 모니터가 신고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산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반입신고 내역을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의 반입신고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모니터를 같이 봐도 된다는 직원의 양해를 구한 뒤 직원의 옆으로 들어가서 모니터를 직원과 함께 확인하였다.

이후 세관 직원은 다른 이용객이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재 방문하면 반입신고 내역이 확인될 것인지를 묻자 세관 직원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고만 대답하면서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세관반출신고대를 떠나 5시경 ○○○항공 탑승수속처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마친 후 2층 식당가에서 자녀들과 식사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6시 30분경 다시 출국심사대로 향했는데, 출국심사대의 상주직원은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며 탑승권 없이 출국심사대로 들어가려던 청구인을 기억하고 청구인에게 반출신고를 하였는지 질문하였고, 청구인이 반출신고를 하러 갔는데 세관반출신고대에서 반입신고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 반출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자, 출국심사대 상주직원은 체크인하면서 탑승권을 받을 때 항공사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청

구인이 항공사 직원도 반출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세관반출신고대에서 반입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했다면 반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이 맞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대답하자 출국심사대 상주직원도 ○○○ 항공사 직원처럼 청구인에게 반입신고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입신고 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세관반출신고대 직원의 말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세관반출신고대를 방문 하여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세관 반출신고대를 재방문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일 뿐, 청구인이 출국 시 반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입국 당시 일시반입확인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였고, 출국 시 반출신고만 하면 관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반출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으로서 반출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처분청의 전산시스템상 문제로 반입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반출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인 바, 단지 청구인의 반출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한 쟁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2.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에 해

당할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문언상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에서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자 했음에도 처분청 측의 전산오류 또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 그 절차를 완료할 수가 없었던바,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〇〇〇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〇〇〇 영주권자인 교포로서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휴대품 통관 고시」 제60조 제1항에서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휴대하여 반입한 쟁점물품을 검사한 결과 수량이 총 〇〇〇점(액세서리 〇〇〇점, 구두 〇〇〇점, 핸드백 〇〇〇점, 시계 〇〇〇점, 의류 〇〇〇점)에 달하고 합계 금액도 미화 〇〇〇불에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수량이 과다하고 물품 대부분이 고가 상표의 제품이어서 상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쟁점물품 모두를 일시반입물품으로 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중 실제로 사용할 물품만 반입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留置)하여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모두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이고 사용한 후 모두 반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모두를 반출 확인받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자 권익 보호 및 적극행정 차원에서 쟁점물품을 일시반입물품으로 등록하고 면세 통관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휴대품 통관 고시」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〇〇〇점의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여 청구인과 합의를 통해 물품 내역만 작성한 후 일시반입확인서 발급은 사후에하기로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1.4.7. 청구인에게 일시반입확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21.4.8.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시반입확인서 및 안내문을 전달하며 쟁점물품의 반출의무와 반출확인 없이 출국 시 받게 되는 관세추징 불이익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였다.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휴대품 통관 고시」 제1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신변용품 등을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시반입물품의 재반출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휴대품 통관 고시」 제63조에서 일시반입물품 반출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반출확인 절차는 입국 시 관세 등을 면제 받은 일시반입물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하는지, 이때 반출하는 물품은 일시반입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재반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출확인 없이 출국하는 경우 면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물품의 일시반입확인서를 통해 ① 일시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 직원에게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 ② 반출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일까지인 점, ③ 일시반입물품을 미반출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총 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최초 출국일인 2021.7.31.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없이 출국(실제 쟁점물품 모두를 반출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하였는바, 처분청이 반출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는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은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물품과 관련된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수출 시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재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13 관30, 2013.10.30.)하였는바, 쟁점 처분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출국 시 세관 직원에게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서 반입신고 내역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청의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신고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① 항공사 체크인 후 기탁수하물에 태그(tag) 부착 → ② 태그가 부착된 기탁수하물에 대한 반출확인 요청 → ③ 세관검사대에서 세관 직원이 기탁수하물을 개장하여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과 일시반입확인서 내역을 대조 → ④ 모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반출일자 등록 → ⑤ 검사를 마친 기탁수하물은 세관 직원 감시하에 세관검사대 옆의 대형수하물 투입구에 투입’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반출확인을 받은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을 요청한 당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세관신고대를 방문하여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하여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외국에서 입던 옷 몇 개라고 답변하며 쟁점물품 개수, 종류, 물품가액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세관 직원이 일시

반입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확인 업무는 여행자가 체크인을 마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체크인을 마친 후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다시 온다고 답변하고 돌아갔으나 이후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위 과정에서 세관 직원은 청구인에게 구두로만 질문하였을 뿐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청구인의 반입신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처분청의 여행자 인적사항 조회 여부 확인요청 및 그 회신 공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세관 직원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을 함께 살펴보았다고도 주장하나, 세관 직원이 사용하는 모니터는 신고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산시스템을 함께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21.7.31. 15시 30분경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10여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출국 시 이용한 ○○○편의 출항시간은 20:40이어서 출국까지는 약 4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비행기 출발시간이 임박하여 반출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 전산시스템의 문제, 출국시간 임박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21.7.31. 20:40 출발 예정인 여객기에 탑승하고자 공항에 도착하여 16:15경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갔지만 항공운항 스케줄 감소로 1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16:30경 세관검사대로 가서 쟁점물품의 반입내역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여기서 세관 직원이 청구인에게 항공사 카운터에 먼저 체크인을 하고 세관검사대를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고, 재방문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항공사 체크인을 마친 후 세관신고대를 재방문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수량, 중량 및 부피를 고려해볼 때 쟁점물품 전부 내지 일부를 기탁수화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세관신고대를 재방문하여 반출확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처분청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 반출확인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반출의무와 반출확인 없이 출국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일시적인 오류였는지 재차 확인하였어야 하나 다시 방문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출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항공사 직원과 공항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의 말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세관 업무에 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들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쟁점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전산시스템에 여권번호로 조회했을 때 반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화면을 인쇄요청하여 증빙자료를 받거나, 반출확인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

의 확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 물품 반출의무 이행 의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출국한 사정을 증명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바, 반출확인 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세 추징 등의 책임은 청구인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체)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
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 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 영주권자인 교포로서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청구인은 2021.3.31. 5:20 ○○○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4개월을 체류한 후 2021.7.31. 20:40발 ○○○편으로 ○○○으로 출국하였다.

(3) 청구인이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은 총 ○○○품목 ○○○점(액세서리 ○○○점, 구두 ○○○점, 핸드백 ○○○점, 시계 ○○○점, 의류 ○○○점)이었는데, 처분청은 입국 시 반입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물품 내역만 작성한 후 사후에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4.5. 18:03 청구인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조사한 가격을 보내드리니 확인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답신을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4.5. 18:44 정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AAA 블랙 슬리퍼 2개로 표기된 것 중 하나는 컬러가 카멜 색상이며, ○○○ 물 하늘색, 핑크 베이지는 브랜드명이 ○○○이고, 색상도 하늘색이 아니라 그레이 색상”이라고 하면서, “가격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표시한 것에 동의하고, 귀금속은 15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고 현지에서 산 것이라 원화로 산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위 반입물품의 합계 금액은 미화 ○○○불 상당이다.

처분청은 2021.4.7. 15:29 청구인에게 재반출 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pdf 파일), BBB 휴대반입물품(엑셀 파일), 재반출조건 휴대반입신고서 인수확인서(한글파일)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메일에 “BBB님이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관세행정 시스템에 입력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반출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1년의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출국하실 때에는 항공사에 기탁화물을 위탁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관에 반입물품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반출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관확인 없이 반출하거나 본인 출국 시 미반출한 경우에는 미반출로 간주되어 그동안 유예되었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출국 시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출국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1.4.8. 처분청에 ‘재반출조건 휴대반입신고서 ○○○, 재반출 관련 안내문’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21.7.31. 출국하면서 세관 직원에게 위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 ○○○’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일시반입물품의 사진 자료를 보면, 해당 사진은 청구인이 출국한 후 미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일건 품목 및 수량은 일시반입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입국 시 반입한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입국 시 휴대품 검사를 담당하였던 처분청의 공항여행자통관검사9관은 2021.12.30. 처분청의 전산정보관리과장에게 청구인의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2021.7.31. 14:00~21:00 사이에 ‘유니패스를 통한 해당 여행자의 인적사항 등 조회 내역과 조회 내역이 존재할 경우 조회한 직원의 직원부호’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산정보관리과장은 2021.12.30.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7) 관세청장은 「휴대품 통관 고시」 제19조 제4호에서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불)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로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 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61조에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일시반입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휴대품 통관 고시」 제63조 제1항에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시반입확인서의 재반출 조건을 보면 제1호에 “본 확인서는 출국 시에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국 시 세관 직원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반입 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항공기의 출발시간이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반출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출국한 것인데 단지 반출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거액의 관세 등을 추징하는 쟁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으로서 수입 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국일까지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휴대품 통관 고시」 제63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입국 시 작성한 일시반입확인서를 출국할 때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국 시 면제받은 관세 등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출국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쟁점물품의 반출확인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반입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체크인 후 세관반출신고대를 재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관 직원에게 여권번호를 통하여 일시반입 내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여권번호를 통하여 처분청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없이 출국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재수출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 쟁점 처분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원이어서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바닥용 Decorative paper의 HS 품목분류

윤 은 영 | 서울세관 분석실

I. 개 요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나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실내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싶을 때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벽면에 도배를 다시 하거나 바닥재를 교체하는 등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벽, 바닥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의 마감재는 각각의 질감, 색깔 등을 갖고 있는데 이를 조화롭게 선택해야 원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특히 바닥재는 공간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때문에 안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 고른다.

바닥재 종류는 대표적으로 장판, 타일, 마루 등이 있다. 이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루는 바닥 마감 재료에 따라 원목마루, 합판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등이 있으며, 강화마루인 경우 합판의 표면에 부착되는 모양지(Decorative paper)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목 무늬를 많이 선택한다.

이렇게 사용되는 강화마루의 바닥표면 마감재인 바닥용 모양지(Decorative paper)는 품목분류상 어디에 분류할까?

이번 호에서는 바닥용 모양지(Decorative paper)분류되는 품목번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페놀수지 및 멜라민 수지

우선 일반적 상식으로 바닥표면에 사용하는 물품은 단단하면서도 물기 등을 흡수하지 않고 더러운 오염물질을 잘 닦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닥용 모양지(Decorative paper)에 사용되는 것이 페놀수지와 멜라민 수지다.

페놀수지는 페놀류와 포름알데하이드류의 축합에 의해 생기는 열경화성 수지이고 내열성, 내산성, 내수성이 좋다.

멜라민 수지 또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가열축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합성 열경화성 수지로 내열성이 높고 투명성과 경도가 높으며 내수성 및 내구성이 좋다.

특히 멜라민 수지는 고압 라이네이트라고 하는 제품군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예로 멜라민 수지에 함침시킨 종이를 고온고압에서 가공하면, 종이의 셀룰로오스와 멜라민 수지가 서로 결합해 단단하면서 광택을 내어 마루, 타일, 가구 상판의 대표적인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이처럼 페놀수지와 멜라민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로 각각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 물품 설명

이번 호에서 알아볼 물품은 바닥재 모양지(Decorative paper)로 물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명 : Decorative Paper Sheet

②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Overlay paper(멜라민수지 함침), Decorative paper(멜라민수지 함침), Kraft paper(페놀수지를 코팅한 종이)를 적층해 열프레스기로 가압해 만든 물품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짐.
- 규격 : 1,225mm × 2,445mm × 0.35mm
- 용도 : 바닥재의 표면 마감재로 합판과 접착해 사용
- 제조공정 : 상층(Overlay paper) - 중층(Decorative paper) - 하층(Kraft paper) 순으로 적층 → 열프레스기로 가압 → 제품
- 플라스틱 층(Overlay층, Decorative층)이 전체 두께의 1/2를 초과하지 않음.
- 상층(Overlay paper) - 중층(Decorative paper) - 하층(Kraft paper)는 열압착 후 접으면 부러짐.

③ 물품 이미지



Ⅲ. 쟁점 사항 및 품목분류 경합세번

○ 쟁점 사항

바닥용 모양지(Decorative paper)는 멜라민수가 함침돼 시트와 페놀수지가 코팅된 종이지트를 적층하고 열압착해 만든 물품으로 종이에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단단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시트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봐 제3921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원재료에서 플라스틱 층(Overlay 층, Decorative 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플라스틱층을 피복한 종이로 봐 제4811호에 분류할지 쟁점이 됐던 물품이다.

○ 품목분류 경합세번

품목번호			품명	비고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90		기타	
	90	90	기타	
	90	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90	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90	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양허 6.5% FCN 0%

품목번호			품명	비고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5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51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1	1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여 265그램 이하인 것	
	51	90	기타	
	51	901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것과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며,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인 것	
	51	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51	9019	기타	
	51	9090	기타	
	59	0000	기타	양허 0% FCN 0%

IV.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복한 종이나 판지물품은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
- (c)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
(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2)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sheet)·필름·박(箔)·스트립

(3) HS 해설서 제3921호의 내용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sheet)·필름·박(箔: foil)·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4)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2호 사목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39류)

(5) 관세율표 제4811호의 용어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6) HS 해설서 제4811호의 내용

(B) 침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종이와 판지’ 참조)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 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포장 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metal foil)을 입혔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은 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

(7) HS 품목분류의견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3921.90호

- 품명 : 시트

- 결정 내용 : 멜라민 수지를 많이 함침시킨 종이로 구성돼 있다. 그 부서지기 쉬운 성질 때문에 접을 때 부서지므로 종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게 된다. 적층판의 제조에 사용된다.

V. 품목분류 사례

① 해외 분류 사례(일본)

- 결정 세번 : 제3921.90호

- 품명 : 멜라민 라미네이트 시트(メラミン ラミネート シート)

- 참조번호 : 110004015(일본)

- 물품 설명

- 플라스틱(plastic) 및 종이로 이뤄지는 판
- 제법 : 멜라민 수지(melamine resin) 및 페놀 수지(phenol resin)를 각각 종이에 함침시켜 건조하는 멜라민 수지(melamine resin)의 함침지 1층 및 페놀 수지(phenol resin)의 함침지 4층을 고온·고압 하로 적층해 판모양(슬랩)으로 한다.
- 사이즈 : 폭 900mm, 길이 1,800mm, 두께 0.8mm
- 재질 : 페놀 수지(phenol resin), 멜라민 수지(melamine resin), 종이
- 함침지의 성분 비율[플라스틱(plastic) 30% : 지(종이) 70%]
- 용도 : 가구 외장, 테이블(table) 천판 등

● 사례① 물품 설명 ●

-プラスチック及び紙からなる板 製法：メラミン樹脂及びフェノール樹脂をそれぞれ紙に含浸させ乾燥する→メラミン樹脂の含浸紙1層及びフェノール樹脂の含浸紙4層を高温・高圧下で積層して板状にする。 サイズ：幅900mm、長さ1,800mm、厚さ0.8mm 材質：フェノール樹脂、メラミン樹脂、紙 含浸紙の成分割合（プラスチック30%：紙70%） 用途：家具外装、テーブル天板等

② 해외 분류 사례(루마니아)

- 결정 세번 : 제3921.90-41호

- 참조번호 : ROBTI2018/003010(루마니아)

● 사례② 물품 설명 ●

The product, referred to as 'laminated paper', is a rigid, layered article composed of two different layers of paper impregnated with phenolic and melamine resins.

This produc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kitchen countertops made of melaminated chipboard.

The product is obtained by embedding in a melamine resin an assembly consisting of a top layer of 'decor' paper with a thickness of 0.08mm, applied over another layer of paper (core) with a thickness of 0.10mm.

The two layers are bonded together with phenolic resins. By impregnating the thus formed assembly into the melamine resin with a thickness of 0.32mm, at pressures greater than 5MPa, laminated paper of 0.5mm thickness is obtained. After impregnation the product no longer has the appearance/character of paper.

At the time of presentation to customs, laminated paper is presented in packs, on wooden pallets, each sheet having the dimensions of 4,100×1,400×0.5mm.

③ 해외 분류 사례(미국)

– 결정 세번 : 제3920.900-4010호; 제3921.90-5010호

– 참조번호 : N065161(미국)

– 물품 설명 : 이 제품은 장식용 표면지와 크라프트지로 이뤄진 적층시트다. 지지층(크라프트지)은 페놀수지로 침투돼 있고, 표면층(장식지)은 멜라민 수지로 침투돼 있다. 금속플레이트를 이용해 고압·고온으로 함께 적층된다.

● 사례③ 물품 설명 ●

... 〈생략〉 ...

A sample was provided with your letter. **The product is a laminated sheet made from layers of kraft paper with a decorative top surface paper.**

You state that the back surface is impregnated with phenolic resin and the top surface is impregnated with melamine resin. The layers are laminated together under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using a metal plate.

The resultant laminate is said to be used as a cabinet liner. The high pressure decorative laminates will be supplied in rectangular sheet form measuring 48inches by 96inches by 0.6millimeter in thickness.

④ 국내 분류 사례

– 결정 세번 : 제3921.90-9030호

– 물품 설명

- 개요 : 멜라민 수지를 함침 시킨 종이 시트 2층(Overlay paper층과 Decorative paper층), 페놀수지를 코팅한 크라프트지 1층을 적층해 열 press 가압해 제조한 시트(제시규격 : 1,225mm × 2,445mm × 0.38mm)

- 용도 : 표면재

– 물품 이미지



⑤ 국내 분류 사례

- 결정 세번 : 제3921.90-9090호

- 품명 : Melamine sheet; DECORATIVE PAPER SHEET, OS3C 3324-S3; PR.CHINA

– 물품 설명

- 멜라민 수지 기제에 페놀수지를 혼합한 것을 종이에 침투시킨 플라스틱 시트로서 접으면 부서지는 등 플라스틱으로서의 단단한 특성을 갖고 있음(제시규격 1,220mm × 2,440mm, 두께 0.7mm).
- 용도 : 표면재(강마루, 칸막이, 벽재, 가구, MDF)

V. 품목분류 고찰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검토 물품은 Overlay paper(멜라민 수지 함침), Decorative paper(멜라민 수지 함침), Kraft paper(페놀 수지 코팅)를 적층한 후 열프레스로 가압해 만든 물품이다.

해당 물품은 Kraft paper층에 멜라민 수지를 함침한 플라스틱층을 적층한 것으로 종이층이 두께가 전체의 1/2을 초과하므로 플라스틱을 피복한 종이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제조공정도를 살펴봤듯이 물품은 단순히 종이에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것이 아니라 열프레스로 가압하는 공정을 걸친 물품이다.

이 공정에서 열경화성 수지인 페놀수지가 종이에 침투해 단단한 시트가 되면서 종이 특성을 잃고 플라스틱 특성을 갖게 된다.

즉 Overlay paper(멜라민 수지 함침), Decorative paper(멜라민 수지 함침), Kraft paper(페놀 수지 코팅)를 적층해 열프레스 가압하면 수지가 경화되면서 하나의 시트로 결합하게 되기 때문에 물품을 접을 때 유연하게 접히지 않고 부서지는 단단한 특성을 갖는 플라스틱 시트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제39류 총설의 '식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d)항'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해 만든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 단단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플라스틱의 본질적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 HS 품목분류 의견서에서 멜라민 수지를 많이 함침시킨 종이로 구성된 시트에 대해 접을 때 부서지므로 종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은 것으로 봐 제3921.9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바닥재 표면 마감재로 사용하는 바닥용 모양지(Decorative paper)는 종이가 분류되는 제48류가 아닌 Kraft paper에 코팅된 열경화성 수지가 열가압으로 내부로 침투돼 종이특성을 잃고 플라스틱 시트가 돼 제39류에 분류됐다.

이는 품목분류 시 물품의 구조뿐만 아니라 물품에 사용되는 재료(성분)의 특성 및 제조공정 등을 확인해 품목분류 관련 규정에 맞게 분류돼야 품목분류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 글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팜주(palm wine)

김 송 미 | 중앙관세분석소

와인은 일반적으로 포도즙을 발효해 만든 발효주다. 최근에는 감으로 만든 발효주인 감 와인, 딸기로 만든 발효주인 딸기 와인 등 다양한 원료로 발효주가 생산되고 있고, ‘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물품은 palm wine(팜주)이라고 불리는 발효주로 야자나무의 수액을 이용해 만든다.

야자주라고도 하는 팜주는 야자수액을 발효시켜 만든 주류로 야자수액은 채집 후 자연적인 효모에 의해 즉시 발효가 시작돼 2시간 이내에 알코올 도수가 최대 4%인 와인이 만들어지며, 증류한 팜주는 알코올 함량이 40~50%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 주로 인도, 미얀마에서 많이 생산되며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생산된다고 한다.

주류는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눌 수 있고 그 예로 발효주는 맥주와 와인(포도주) 등이 있고, 증류주는 소주, 고량주와 위스키 등이 있다.

관세율표상에서 발효주는 맥주(제2203호), 포도주(제2204호),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제2205호), 그 밖의 발효주(제2206호)로 나뉜다.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에는 사과주스를 발효해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인 사과술(Cider), 건포도주(raisin wine), 청주, 팜주(palm wine), 설탕·물·생강(ginger)을 효모로 발효해 제조한 맥주인 진저맥주 등 이전 세번에 분류되지 않는 발효주가 분류된다.

주류는 원료와 제조공정에 따라 HS 4단위와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용한 원료와 정확한 제조공정 파악이 필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야자수액, 맥아즙, 효모와 야자수액조당 등을 혼합 후 발효해 만든 발효주(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상)로 제2206.00-1090호의 과일발효주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 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9) 팜주(palm wine) : 팜나무(palm tree)의 수액으로 제조한 술 … 〈중략〉 …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야자수액, 맥아즙, 효모와 야자수액조당 등을 혼합 후 발효해 만든 그 밖의 발효주(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상)이므로 제2206.00-9090호에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Fruits fermented beverages	2206.00-1090 (F 15%)	Other fermented beverages	2206.00-9090 (F 15%)



남아공, ‘아프리카 별’ 환수 요구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남아공에서 왕관 위에 박힌 다이아몬드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왕실의 왕관과 홀(笏, 왕이 손에 쥐는 막대 모양 물건)에 박혀 있는 두 다이아몬드는 원석 한 덩어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1905년 남아공 북동부 옛 트란스발 지역의 개인 광산에서 발견됐고, 원석의 무게가 3,106캐럿(621g)이며, 크기는 사람의 심장과 맞먹었다고 한다.

영국 왕실에 의하면, 1907년 당시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선물로 받았고, 원석은 그 다음 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보석업체 ‘로열 아서’로 보내졌다.

거기에서 원석을 가공해 큰 조각은 ‘아프리카의 거대한 별’,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작은 별’로 명명됐고, 큰 것은 영국 왕의 홀, 작은 것은 왕관에 사용됐다.

이 다이아몬드는 ‘선물’ 형태로 영국 왕실에 갔다고 하지만, 남아공은 당시 자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 반출 거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 머리를 덮을 수 있는 것으로 섬유재 등 일반적인 모자는(재질 불문)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에 분류된다.

그러나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6812호)나 제95류의 인형 모자·그 밖의 완구용 모자·카니발 용품 등은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래 모자로서의 기능과 용도가 아닌 예를 들어 옛 고분에서 출토되거나 또는 영국 여왕과 같은 특수 신분에서 있는 사람들의 상징성과 직위를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 얹는 관으로서 귀석과 귀금속으로 특수 제작된 것이라면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생략〉’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물론 제작연도가 100년을 초과했다면 제9706호 ‘골동품’에 분류될 것이다.

관세·무역 실무 백과사전

2022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온라인 구매 **10% 할인!**

~~120,000원~~ → 108,0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2022.3.21. 발간
상·하권 전 4,940p. 상당



Point 1 2022년도 제7차 HSK 전체개정 반영

Point 2 신규 발효 FTA(인도네시아, 이스라엘, RCEP)·WTO 등
주요 무역협정세율 수록

Point 3 통합공고, 세관장 고시, 수출입 관계법령 수록

도서구매문의 Tel : 02) 3416-5112 / Fax : 02) 3442-2840

온라인구매처 커스트라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무역 전문가의 필수도서

「관세행정규칙집」 전면개정 증보판

온라인 구매 **10% 할인!**

~~145,000원~~ → 130,5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모든 관세행정규칙을 한 권에 모든 관세행정실무의 지침서.
오직 책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최신 관세청 고시·훈령·예규·지시는 물론
현재 시행 중인 관세행정규칙 총 망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양장 4,003p.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2 관세법령집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행정법의 공통 메뉴얼

★ 구매 문의 : 02) 3416 - 5112 ★

★ 온라인 구매처 : smartstore.naver.com/kctdi ★

최신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2년 4월 11일 기준 수록



개정 이유 업데이트

22년 시행법령 개정 이유 및
주요 변경 내용 수록



가독성 높은 구성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비교 형식 배치

모든 법령을 연결하는 「행정기본법」과 그 절차를 담은 「행정절차법」을 추가
관세행정업무는 이 한 권으로!